

「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 조례폐지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4. 11. 19(수) 평창군수(보건사업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4. 11. 25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4. 12. 08(화) 제207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보건사업과장 채정희)

- 2008년 12월 31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이 상위법령이 신설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폐지 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 조례
폐지 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폐지 조례안

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